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1. 3. 15.(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3월 3일
- 회부일자: 2021년 3월 5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대상(안 제3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4조)
- 근로자의 의무(안 제5조)
- 기본계획(안 제6조)
- 시행계획(안 제7조)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안 제8조)
-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안 제9조)
- 안전보건교육 등(안 제10조)
- 안전보건표지 등(안 제11조)

- 안전보건관리 등(안 제12조)
- 실태조사(안 제13조)
-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·운영(안 제14조)
- 재정지원(안 제15조)
- 협력체계(안 제16조)
- 시행규칙(안 제17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적용대상을 각각 정하고, 안 제4조와 안 5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근로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음.
-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 근로자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, 공립유치원,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4,035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.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‘산업안전보건위원회’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, 안 제9조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,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명예산업안전감독관’을 두도록 하였음.

-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,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,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근로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